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3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3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2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3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2.

(3) 회 부 일 : 2025. 9.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

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이전지원세제 대상 추가 등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

제60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음.

제61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분할 익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이전(제60조) 및 법인본사이전(제61조)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 분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 (제60조)	법인본사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제61조)
요건	대상법인	대도시 안 공장에서 사업영위 법인 *사업기간 불문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둔 법인 *본사를 둔 기간 불문
	이전요건	대도시→대도시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1년 (기존공장 취득) 또는 3년(신규공장 준공) 내 이전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외 - 선이전 후 2년 내 양도 - 선양도 후 3년 내 이전
	업종요건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과세이연		○ 과세이연금액=(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이전비율 -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또한, 수도권에 공장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제63조) 및 본사(제63조의2)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도
요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의 사업영위 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업종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투자 및 고용	해당 없음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이상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본사 이전 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 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
세액감면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성장촉진지역등의 경우 12년간 감면 (10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내의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10년간 감면(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등의 경우 7년간 감면 (5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한도		없음	

□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2,052억원에서 2024년 79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본사이전 세액감면은 2021년 3,032억원에서 2024년 384억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부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0조)	0.1	1	2	1	1	1
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 (제61조)	2	5	7	5	5	5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63조)	2,052 소득세 (253) 법인세 (1,799)	1,192 소득세 (264) 법인세 (928)	1,279 소득세 (249) 법인세 (1,029)	799 소득세 (195) 법인세 (604)	775 소득세 (141) 법인세 (634)	610 소득세 (16) 법인세 (594)
본사이전 세액감면 (제63조의2)	3,032	2,993	727	384	490	50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이천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 대도시 밖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3조	공장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5년간 100% + 2년 50% ¹⁾ 7년간 100% + 3년 50% ²⁾ 10년간 100% + 2년 50% ³⁾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1)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2)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으로 이전

3)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위기지역(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은 제외)으로 이전

☐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의 본사	수도권 →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대도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¹⁾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²⁾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³⁾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나.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감면기간 확대(윤준병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형동의의원안, 권영진의의원안, 윤영석 의원안(3),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 안(2), 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0조) ○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수도권 밖의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기장군·달성군·군위군, 산업단지 제외)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특례: 공장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강명구의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강명구의의원안)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 ○ 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법인 ○ 업종요건: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특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지 및 건물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u>(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 <u>2028. 12. 31.</u>(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30. 12. 31.</u>(윤준병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2026. 1. 1.(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현행과 같음) ○ <u>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u>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u> (윤영석의원안) <u>2028. 12. 31.</u> (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u>2029. 12. 31.</u> (김형동의원안) <u>2030. 12. 31.</u> (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적용기한 연장		

현행	개정안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것 -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업종요건: 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감면대상: ①의 금액에 ②와 ③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①) -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②) -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③)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정부안)																																				
<table><tr><th></th><th>낙후지역¹</th><th>그 외 지역</th></tr><tr><td>수도권²</td><td>5년 100% +2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³</td><td>5년 100% +2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중규모도시⁴</td><td>7년 100% +3년 50%</td><td>5년 100% +2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2년 50%</td><td>7년 100% +3년 50%</td></tr></table>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table><tr><th></th><th>낙후지역</th><th>그 외 지역</th></tr><tr><td>수도권</td><td>5년 100% +3년 50%</td><td>감면 없음</td></tr><tr><td>수도권 연접지역</td><td>5년 100% +3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지방광역시</td><td>7년 100% +4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중규모도시</td><td>10년 100% +5년 50%</td><td>5년 100% +3년 50%</td></tr><tr><td>그 외</td><td>10년 100% +5년 50%</td><td>7년 100% +4년 50%</td></tr></table>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축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주진우의원안)																																				

현 행	개정안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7년 100% +2년 50%	7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9년 100% +3년 50%	7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감면개시기한: 5년→7년(주진우의원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윤영석의원안) 2028. 12. 31.(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김형동의원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권영진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주진우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김정재의원안) 2026. 1. 1.(한병도의원안, 김형동의원안, 권영진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강명구의원안, 정부안, 주진우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한병도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37), 김정재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406), 김형동의원안 2025. 7. 7. 발의(의안번호 11306), 권영진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94), 윤영석의원안 2025. 7. 23. 발의(의안번호 11674), 윤영석의원안 2025. 7. 25. 발의(의안번호 11717), 윤영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69), 추경호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4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1), 강명구의원안 2025. 9. 15. 발의(의안번호 12977), 주진우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52), 강명구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2993)

□ 개정안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확대하고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정부안)]

	낙후지역 ¹⁾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 ²⁾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 ³⁾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⁴⁾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낙후지역⁴⁾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개정안은 50%의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 8년간 감면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

4)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등 수도권 연접지역 또는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등 중규모도시와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위와 마찬가지로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광역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혜택이 적용되는데 50%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행법상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최초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진우의원안은 본사이전 세액감면제도의 감면 개시기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3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 대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2023년 기준 52.3%로 전국에서 수도권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수도권 인구 및 인구밀도 현황]

(단위: 천명, 명/km²)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인구	인구 밀도
전국	51,836	516	51,745	515	51,628	514	51,713	515	51,751	515
수도권	26,021	2,193	26,054	2,195	26,053	2,195	26,190	2,206	26,304	2,215

자료: 통계청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명목)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936	2,008	2,043	2,062	2,224	2,328	2,404
수도권	993	1,046	1,066	1,091	1,175	1,229	1,258
수도권 비중	51.3%	52.1%	52.2%	52.9%	52.8%	52.8%	52.3%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소득(잠정), 2024. 12.

□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감면기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첫째,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본사·본점 52.06%(사업체 수 기준), 64.67%(종사자 수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⁵⁾, 2,764개 상

장사 가운데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1,103개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며 경기도(807개)와 인천광역시(96개) 등 수도권 전체로 본다면 약 73%의 상장사가 집중되어 있음.

기업 이전 조세특례제도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 각종 특구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둘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동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동 조세특례에 대한 수혜기업들의 높은 사전 인지도(본사 78.0%, 공장 65.4%)하에 세액감면 제도가 기업이전 결정에 기여(본사 46.4%, 공장 51.5%)한 것으로 분석되었고⁶⁾, 기업성과(투자, 고용 및 생산성 증대)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사 이전 특례는 기업의 투자 개선, 공장 이전 특례는 생산과 투자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⁷⁾

또한, 조세감면 혜택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고용이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세특례가 전체적으로 지역 고용을 증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⁸⁾

5) 통계청, 'KOSIS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6)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7)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4)-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 9.

8)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다른 유사 조사특례 제도 대비 가장 장기간의 감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제도의 감면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각종 지역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위기지역(7년)을 제외하면 최대 5년까지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지역특구 감면제도 개요]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위기지역 창업기업(§99의9)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 2025년 6월말 기준 해당지역 없음	5년 100% 2년 5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 구역(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새만금투자진 흥지구, 평화경제특구 (§121의17)	창업 기업	제조업·엔지니어링·전기통신업 등 : 20억원 이상 투자 + 30명 이상 고용 연구개발업 :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물류업 : 10억원 이상 투자 + 15명 이상 고용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제주투자 진흥지구 (§121의9)	입주 기업	총사업비가 2천만달러 이상의 관광업, 5백만달러 이상의 문화산업·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청소년수련시설사업·레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교육사업·의료산업·교육원·연수원·첨단기술활용산업 등	3년 100% 2년 50%
	개발 사업자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3년 50% 2년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12의2)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3년 100% 2년 50%

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구 분	감면요건	감면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121의8)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21의20)	문화 관련 산업 :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 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청소년수련시설사업 · 교 육원운영사업 : 30억원 이상 * 해당지역 : 광주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121의21)	금융 및 보험업 : 20억원 이상 + 10명 이상 고용 *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121의22)	보건의료기술산업(해당지역: 충북 오송, 경북 대구) 식품산업(해당지역: 전북 익산)	

둘째, 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액감면 기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⁹⁾

9)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 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임.

정책적 목적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¹⁰⁾된다는 점에서 적용 배제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효과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공장이전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수혜기업 1,584개 중 이전한 공장의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¹¹⁾ 경기도(1,116개)로 이전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인천(206개), 충청남도(85개), 충청북도(56개) 순서로 나타나 수도권 인근으로 공장 이전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¹²⁾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10)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11) 단, 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함.

12)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지역별 공장 이전 세액감면 수혜기업 수]

(단위: 개)

지역	합계	수혜기업 수		
		법인의 공장 이전	중소기업 수도권 안	중소기업 수도권 밖
강원도	22	10	1	11
경기도	1,116	75	840	201
경상남도	4	1	0	3
경상북도	10	3	0	7
광주광역시	4	1	1	2
대구광역시	3	2	0	1
대전광역시	12	3	4	5
부산광역시	2	1	1	0
서울특별시	17	15	2	0
세종특별자치시	5	2	2	1
울산광역시	6	3	0	3
인천광역시	206	16	157	33
전라남도	12	2	1	9
전라북도	13	4	2	7
제주특별자치도	3	1	1	1
충청남도	50	2	4	44
충청북도	56	7	4	45
전체	1,584	206	1,012	366

주: 2016년~2023년의 기간 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5)-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2025. 9.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적용기한 연장 등

현 행	개정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1항) ○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감면율: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2022년 세법개정으로 3년 연장됨	☐ <u>적용기한 연장</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엄태영의원안, 정부안)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30. 12. 31.(최수진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최수진의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85조의6제2항)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 감면율: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2022년 세법개정으로 3년 연장됨	☐ <u>적용기한 연장 또는 폐지</u>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현행 유지(이종욱의원안, 최수진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의원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 이후 영구적으로 20%(최은석의원안) ○ 적용기한: 2025. 12. 31.까지 인증받은 경우 영구 적용(최은석의원안) 2027. 12. 31.(이종욱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엄태영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u>2030. 12. 31.</u>(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2026. 1. 1.(이종욱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 공포후 6개월(최은석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적용(최은석의원안)

* 이종욱의원안 2025. 1. 7. 발의(의안번호 7297), 최수진의원안 2025. 1. 24. 발의(의안번호 780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최은석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63), 엄태영의원안 2025. 6. 20. 발의(의안번호 1095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2. 발의(의안번호 12931),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각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2025년 말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 의원안)

□ 현행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¹³⁾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초로 소득 발생 후 4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이었으나 2012년 세법개정 시 5년간 50% 감면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세법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율이 상향되었음.

이후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하여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감면한도를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음.

□ 2024년 12월 기준 총 4,8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¹⁴⁾되었으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 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③ 사회적 목적 실현(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며, 이 중 3,762개 기업이 현재 운영 중임.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현황(연도별)]

구분	'07~'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신청	2,068	481	427	326	306	372	555	519	657	532	526	335	7,104
인증	1,080	265	295	265	256	312	392	429	500	428	371	236	4,829
현재 운영	628	164	189	190	191	248	321	375	452	404	364	236	3,762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한, 현재 운영 중인 3,762개 중 789개(21.0%)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은 2,973개(79.0%)로서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개, %)

비 영 리 789개소 (21.0%)					영 리 2,973개소 (79.0%)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법인	영농(어) 조합법인	협동 조합
311 (8.3%)	54 (1.4%)	71 (1.9%)	353 (9.4%)	- (0.0%)	2,349 (62.4%)	188 (5.0%)	109 (2.9%)	327 (8.7%)

주: 괄호 안은 전체 사회적기업 수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¹⁵⁾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여 양질의

⑤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회사·합자조합만 해당)

15)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장려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수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79개,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78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7배 정도 많았음.

또한,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유급근로자 71,950명 중 64.5%인 46,385명이 취약계층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⁶⁾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공급¹⁷⁾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육성을 장려하는 차원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2024.11.

17)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정책목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왔음. 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설정되어 있음.

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사회적기업 중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이 상당하므로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회적기업 중 30% 이상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연간 3천만원 이하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원 미만	395	12.9	393	11.6	487	13.7
-5천만원 ~ -1천만원	407	13.3	438	12.9	488	13.7
-1천만원 ~ 0원	162	5.3	185	5.5	183	5.1
0원 ~ 3천만원	979	32.4	1,141	33.6	1,193	33.6
3천만원 ~ 5천만원	274	8.9	321	9.5	306	8.6
5천만원 ~ 1억원	332	10.8	381	11.2	333	9.4
1억원 ~ 3억원	344	11.2	385	11.3	387	10.9
3억원 ~ 5억원	85	2.8	72	2.1	95	2.7
5억원 이상	72	2.4	78	2.3	83	2.3
합계	3,050	100.0	3,394	100.0	3,555	100.0

주: 당기순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도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셋째,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야 하므로,¹⁸⁾ 감면세액을 공익적인 목적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민간시장 진입단계별 맞춤형 판로지원, 3단계(초기 경영지원→사업화 및 전문화→사업 확장 및 시장 진출) 성장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5년 284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공제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 9.) 발표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확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된 만큼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일률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가치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수준을

1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의 획일적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결과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로 사회적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2)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이종욱 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19)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12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각종 지원정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수	331	391	473	566	622	694	79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현행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촉진하려는 제도로써, 2010년 세법개정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감면율 상향 및 한도 신설 등이 이루어졌으며 적용기한이 4번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연혁]

시행연도	내 용
2011년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발생 후 4년간 50% - 적용기한: 2013년 12월 31일
2013년	·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발생 후 5년간 50%
2014년	·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
2017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2020년	·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2023년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종욱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 최은석의원안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에서 영구적(최초 3년 100%, 4~5년 50%, 6~10년 30%, 11년~ 20%)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최근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전체 인구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원의 적용기한 또는 감면기간을 연장 및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하방을 유지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장애인 및 전체 근로자 고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장애인	34.9	34.9	34.6	35.3	34.0	33.8
전체	60.9	60.1	60.5	62.1	62.6	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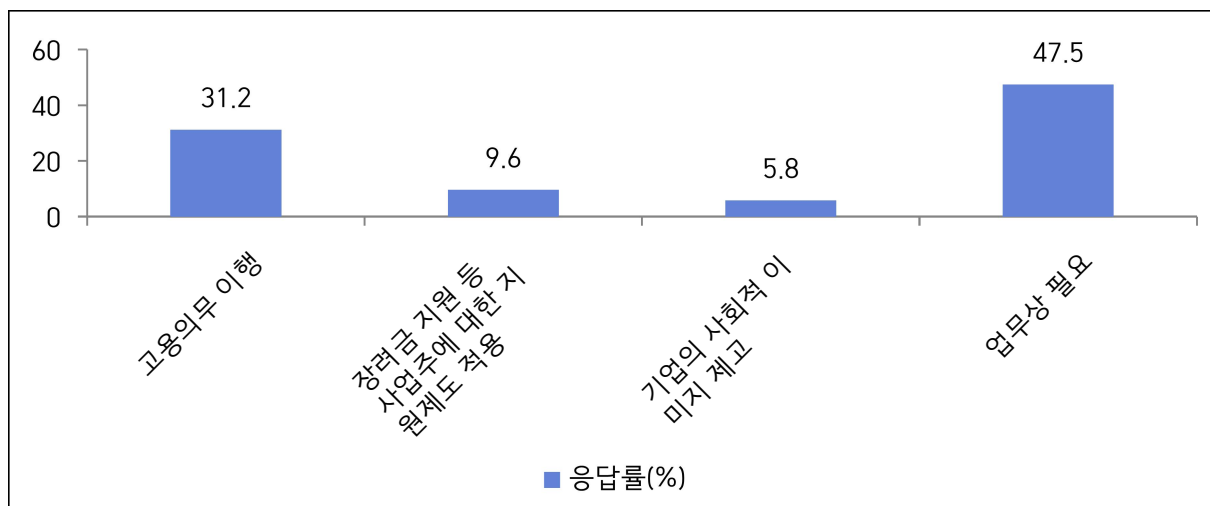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하여 장애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0.83%로 OECD 평균(2.26%)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²⁰⁾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미흡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적용을 위해 고용하고 있는 비율도 9.6%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장애인 근로자 채용 이유]



주: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대상 심층조사 결과(2022년 12월말)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동 특례에 따른 세제지원 외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각종 수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2023. 12.

수료 비용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5년 총 52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²¹⁾.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²²⁾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도 총 구매액은 목표 비율을 상회한 8,760억원(총 구매액의 1.25%)에 달함²³⁾.

둘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1) 지원금액(억원): ('20) 274 → ('21) 285 → ('22) 364 → ('23) 449 → ('24) 529 → ('25) 529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23) 우선구매 목표 비율(%): ('19년)0.3 → ('20년~'22년)0.6 → ('23년~'24년)0.8

우선구매 실적(%): ('19년)0.78 → ('20년)0.91 → ('21년)0.92 → ('22년)1.01 → ('23년)1.16 → ('24년)1.25

문 의 처
02)6788-5154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세액공제 신설(최은석의원안)

☐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85조의11) ○ 공제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외)의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공제율: 25% ○ 적용기한: 없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최은석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63)

☐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24)에 따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제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25%를 당해연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²⁵⁾.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크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일반 표준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²⁶⁾,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를 투자하여 자회사(장애인 표준사업장)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장을 말하고, 일반 표준사업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을 말함.

- 개정안은 내국인이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2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일반 표준사업장 외에 중증장애인 일자리(고용) 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개소가 운영중임(2025년 3월말 기준)

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의 불리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됨.

최근 고용률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전체 인구 고용률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장애인 고용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장애인 및 전체 근로자 고용률 현황]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월
장애인	34.9	34.9	34.6	35.3	34.0	33.8
전체	60.9	60.1	60.5	62.1	62.6	63.5

자료: 통계청

이처럼 전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및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3월말 기준 809개소의 표준사업장(자회사형 172개소, 컨소시엄형 1개소, 일반 636개소)이 운영중임²⁷⁾.

27) 2020년 473개소 11,115명 → 2021년 566개소 12,656명 → 2022년 622개소 14,407명

[연도별 표준사업장 인증업체 수 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장애인 고용 하방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창출을 통하여 장애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지·확대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0.83%로 OECD 평균(2.26%)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²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의 미흡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2023. 12.

보임.

첫째,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각종 수수료 비용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5년 총 52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²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도 총 구매액은 목표 비율을 상회한 8,427억원(총 구매액의 1.16%)에 달함³⁰⁾.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30) 우선구매 목표 비율(%): ('19년)0.3 → ('20년~'22년)0.6 → ('23년)0.8

우선구매 실적(%): ('19년)0.78 → ('20년)0.91 → ('21년)0.92 → ('22년)1.01 → ('23년)1.16

현행법 제85조의6제2항³¹⁾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가 운영중임.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고,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상품 구매 세액공제는 생상품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두 제도가 궁극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지원이라는 동일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특례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4

3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